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10100252] [인터넷주소: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2011.07.05] www.chakhannakji.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2025.02.27] 대표 이메일주소
6411hjk@naver.com]

[착한낙지(FOOD CHT&S)]

정 보 공 개 서

[푸드이노베이션]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

[푸드이노베이션]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동막길19-2(장상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1588-8617]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31-416-1430]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사업팀 1588-8617]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4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7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8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5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29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0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2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32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푸드 이노베이션	착한낙지 (FOOD CHT&S)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동막길 19-2 (장상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13.06.01	손학봉	1588-8617	031-416-1430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34-31-79065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 해당없음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해당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착한낙지(FOOD CHT&S)]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착한낙지(FOOD CHT&S)	
상 호	착한낙지(FOOD CHT&S) 00점	
상표(서비스표)		상표등록번호 : 41-0260341-0000
광 고	-	
그 밖의 영업표지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575,809	79,153	496,657	1,228,122	357,008	357,008
2022년	436,372	67,296	369,076	1,245,872	356,357	309,973
2023년	605,450	328,570	276,881	1,166,477	272,778	270,679

[별첨 1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손학봉	대표	2010. 08. 01 ~ 현재	대표	회사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해당 없음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 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해당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 및 등록(일자)	출원 및 등록번호	등록자(소유권자)	등록만료일
착한낙지(FOOD CHT&S) (상표, 서비스표권)	영업표지 및 제품사용	2012.06.07 출원	출원번호 : 41-2012-0019226	손학봉	2033.06.03
		2013.05.21 등록	등록번호 : 41-0260341-000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착한낙지(FOOD CHT&S)]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1년 02월 01일

2. [착한낙지(FOOD CHT&S)]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푸드이노베이션	착한낙지 (FOOD CHT&S)	손학봉	2011.02.01. ~ 현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동막길 19-2(장상동)

3. [착한낙지(FOOD CHT&S)]업종

영업표지	업종	
착한낙지 (FOOD CHT&S)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낙지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착한낙지(FOOD CHT&S)] 가맹점 및 직영점
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56	55	1	57	56	1	54	53	1
서울	5	5	-	7	7	-	7	7	-
부산	3	3	-	3	3	-	3	3	-
대구	3	3	-	3	3	-	3	3	-
인천	6	6	-	6	6	-	5	5	-
광주	-	-	-	-	-	-	-	-	-
대전	4	4	-	3	3	-	3	3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4	13	1	16	15	1	15	14	1
강원	3	3	-	2	2	-	3	3	-
충북	1	1	-	1	1	-	1	1	-
충남	4	4	-	4	4	-	4	4	-
전북	3	3	-	2	2	-	2	2	-
전남	-	-	-	-	-	-	-	-	-
경북	6	6	-	6	6	-	6	6	-
경남	3	3	-	3	3	-	2	2	-

제주	1	1	-	1	1	-	-	-	-
----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착한낙지(FOOD CHT&S)]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49	18	12	-	-	55
2022년	55	7	-	6	1	56
2023년	56	3	-	6	-	53

6. [착한낙지(FOOD CHT&S)]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 없음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착한낙지(FOOD CHT&S)]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 말 가맹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평균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53	765,540	21,051	3,219,590	80,490	14,844	742	52곳 기준
서울	7	847,239	25,820	1,813,681	45,342	297,000	13,626	-
부산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구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인천	5	977,028	27,463	2,113,563	52,839	168,293	4,455	-
광주	-	해당없음	-	-	-	-	-	-
대전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울산	-	해당없음	-	-	-	-	-	-
세종	-	해당없음	-	-	-	-	-	-
경기	14	600,019	16,448	1,230,777	30,769	14,844	742	13곳 기준
강원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북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남	4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북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남	-	해당없음	-	-	-	-	-	-
경북	6	556,280	14,647	1,374,617	34,365	48,289	1,339	-
경남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제주	-	해당없음	-	-	-	-	-	-

당사는 POS사용을 강제화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지역별로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경기 1개 가맹점은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매출액을 1년 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8. [착한낙지(FOOD CHT&S)]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착한낙지(FOOD CHT&S)]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53	2,284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해당없음

당사에서 [2023년]에 [착한낙지(FOOD CHT&S)]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29]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광고	소계					
	TV					
	라디오					
	인터넷					
판촉	소계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상록수지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3-4	031-409-991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사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해당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해당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해당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착한낙지(FOOD CHT&S)]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가맹비 (영업표지 사용 대가)	5,500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반환되지 않음	소멸성 비용	귀하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미경과 일수의 비율에 따라 반환
교육 및 훈련비	5,500				

[귀하는 가맹점营业을 개시하기 전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 가맹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때까지 당사가 본 계약상 이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 해당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11,0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1,000]
가맹비(영업표지 사용 대가)	5,500
교육 및 훈련비	5,5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60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 계		[178,300~ 179,400]				
필수설비 (정착물)	주방집기, 비품류	견적업체 또는 임의선정 50,000	833	업체와 별도 계약에 따름	설치전 계약 취소	
인테리어, 간판 (점포 내장공사)	견적업체 또는 임의선정	125,000	2,083	인테리어 업체와 별도 계약 체결	공사 전 계약취소	당사가 규정한 인테리어 표 준안에 따라 시공
초도물품	견적업체 또는 임의선정	3,300~4,400	-	공급3일전	물품미공급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인테리어는 직접 시공 할 수 있으며 직접 시공 시 가맹본부의 철저한 감리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사에 납부해야 할 감리비 3.3㎡(1평)당 금이십이만원(220,000원, VAT포함)입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당사가 상권분석과 관련하여 입지 선정 조언→가맹희망자 입지 선정 →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가 최종 의사 결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착한낙지(FOOD CHT&S)]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가맹금 분할 납부 : 귀하는 당사에게 가맹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당 사	100% (가맹본부)	-	-	-	브랜드이미지, 상품광고
	당 사	100% (가맹본부)	-	-	-	가맹점모집+ 상품광고
	당 사	100% (가맹본부)	-	-	-	가맹점 모집 광고
판촉분담금	자율선택	100% (가맹점주)	-	-	-	판촉시
교육훈련비	당 사	협의	교육 2일전	교육 미 실시	소멸성 비용	교육 필요시 지급
로열티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	당 사	330	매월 말일	반환안됨	후불	매월 납부
점포환경개선 비용	업체미지정	가맹본부 분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	-	33페이지 참조
지연이자	당 사	연18%	지 급 기 일 의 다 음 날 부 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원·부재료 상품대금지급 기한을 경과 시 부담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점사업자 임의선정	3,300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공사 전 계약 취소	소멸성 비용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2) 구입 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낙지, 양념소스, 고춧가루, 고추맛기름 등

의 필수 품목은 당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공급하는 제3자 물류 형태(나머지는 가맹점 사업자가 자율 구매)이므로 본 차액 가맹금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회계, 재고처리	해당 없음		
위생처리	가맹점사업자의 위생관리에 대한 감독	년 2회	문의: 가맹본부
각종 설비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정착물을 비롯한 각종 설비 관리 상태 점검	년 2회	문의: 가맹본부
원 부자재, 제품 및 상품 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원 • 부자재, 제품 및 상품의 보관상태, 신선도 유지 상태 등 점검	년 2회	문의: 가맹본부
가맹본부 운영지침 준수	타사제품 취급, 운영매뉴얼의 이행 여부, 교육 • 훈련 등 점검	년 2회	문의: 가맹본부

[귀하는 위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당사 직원이 출입,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가 본 계약이 정하는 각종 영업 및 전산자료 등의 조회 또는 출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실시 후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	협의하여 부담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점포 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실시 후	점포이전 합의시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

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착한낙지(FOOD CHT&S)]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

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의 종료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① 귀하는 본 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및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손해배상 외 1일당 금100,000원의 위약금을 부과 합니다.
- ② 귀하는 당사와 관련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POS시스템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메뉴판 등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손해배상 외 1일당 금100,000원의 민사상 위약금을 부과하고, 형사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가 보유하는 운영매뉴얼 등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당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가 제2항 규정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⑤ 귀하는 공급받은 상품 중에서 하자가 없는 상품은 당사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당사는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합니다. 다만 하자가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반환여부 및 그 가격을 정합니다.
- ⑥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착한낙지(FOOD CHT&S)]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착한낙지(FOOD CHT&S)]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	--------------------------------	---------------	----

해당 없음	-	-	-	2023년 기준
-------	---	---	---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착한낙지(FOOD CHT&S)]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 없음	-	-	-	-	2023년 기준

2) 당사가 [착한낙지(FOOD CHT&S)]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 없음	-	-	-	-	-	2023년 기준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낙지볶음덮밥, 낙지가마솥덮밥, 낙지갈비탕, 낙곱새전골, 낙지해물파전 낙지볶음 / 낙지갈비탕 / 낙곱새 SET 새우튀김, 만두, 갑오징어숙회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상품 공급의 제한 및 중단, 계약 해지	-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고,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공급하는 품목만 취급하

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상품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상품 공급의 제한 및 중단, 계약 해지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 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낙지볶음덮밥	15,000	홈페이지에 공지	2024.1월 기준
낙지가마솔덮밥	17,000	"	"
낙지갈비탕	15,000	"	"
낙곱새전골	45,000	"	"
낙지해물파전	17,000	"	"
낙지볶음 SET	59,000	"	"
낙지갈비탕 SET	79,000	"	"
낙곱새 SET	94,000	"	"
새우튀김	10,000	"	"
만두	5,000	"	"
잡오징어숙회	10,000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낙지류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푸드이노베이션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 상 洞 단위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가맹점간 반경2Km. 소형배달전문점1.5km의 이격거리를 두되,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영업지역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쇼핑몰, 대형아울렛 등)은 위 설정과 별도의 영업지역입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해당 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해당 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97%	3%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착한낙지(FOOD CHT&S)]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 또한 3년으로 한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 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원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제2항 제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제2항 제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6조 제2항 제3호 가목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6조 제2항 제3호 나목
○ [착한낙지(FOOD CHT&S)]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6조 제2항 제3호 다목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6조 제2항 제3호 라목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약정해지**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유예기간 없이 해지하는 **즉시해지** 2가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정해지 사유

< 귀하가 당사에게 가맹계약을 약정해지 할 경우>

귀하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착한낙지(FOOD CHT&S)』 가맹사업시스템의 명성이나 신뢰가 훼손되어 귀하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에게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1회 이상 당사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계약을 약정해지 할 경우>

약정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 경매 신청이 된 경우	제34조 제1항 제1호
2.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 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4.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6.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7. 가맹점사업자의 채무가 계약이행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또는 대금지급을 연체한 경우	
8.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규정에 의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11. 가맹점사업자가 감독 및 시정요구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가맹점사업자가 품질기준과 영업관리 기준을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1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 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른 필수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1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타 가맹점에 공급 또는 경쟁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16. 가맹점사업자가 물품공급비용 미결제 한 경우	
17. 자점매입 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18.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9. 가맹점사업자가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했을 경우	
23.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24. 본 계약의 준수사항 위반 시, 특약사항 위반 시	제34조 제1항 제2호
25. 가맹점사업자가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2) 즉시해지 사유

< 귀하가 당사에게 통지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해지 할 경우>

1. 당사가 파산, 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당사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3. 당사가 본 계약상의 가맹사업의 기초가 되는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 또는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 단, 영업양도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영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사가 귀하에게 통지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해지 할 경우>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4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위 즉시해지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본 계약서 제34조 제2항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와 상호 합의를 한 후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는 경우	제43조 제2항 제1호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제43조 제2항 제2호
○ 가맹사업의 통일화 및 활성화를 위한 영업방침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43조 제2항 제3호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제43조 제2항 제4호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가맹점사업자가 위 계약수정사유에 따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계약갱신까지 현행 그대로 유지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에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지므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 위탁행위는 불가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가맹본부의 상속 승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착한낙지(FOOD CHT&S)]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

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낙지 관련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착한낙지(FOOD CHT&S)]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 ~ 21 :00(점포 여건 및 유사업종의 영업시간, 고객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본 계약 체결 시 당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이상 월22일 이상 개점하여 야 하고,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연속하여 5일 이상 휴업할 수 없습니다. 단, 법정 공휴일로 인 해 연속적인 휴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문의: 가맹사업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해당 없음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 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	가맹사업팀	-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분기	가맹사업팀	-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	가맹사업팀	-

[가맹점 방문 빈도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소속 가맹점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기준, 평가시기, 평가방식 등에 따라 가맹점을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전체 광고 행사로서의 [착한낙지(FOOD CHT&S)] 브랜드 이미지 제고(상품 광고) 또는 가맹점 모집을 위한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지역 광고의 경우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별도공고)			행사 계획 공고→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개별 행사, 광고
판촉행사	가맹점별 지역판촉 행사	없음	전액부담	-	지역광고 등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써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하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위약벌, 위약금과는 별도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본 계약상의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17조(비밀유지의무), 제18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약별로 금삼천만원 (부가세 없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35조(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사항) 1항을 위반할 경우 1일당 금삼십만원(부가세없음)을 위약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25조(자점매입금지)를 위반할 경우 금일천만원(부가세 없음)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무단 폐점, 무단 영업표지 변경, “갑”의 양수도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포를 양도한 경우 금일천만원(부가세 없음)을 위약벌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7]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8p~9p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등공사	- 공사 실시, 필수 설비 구입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최초상품구매	- 초도물품 구매(가맹점사업자 임의 구매)	D-2(2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 용(장비·잡기의 교 체비용을 제외 한 실내건축공 사에 소요되는 일체 의비용 단, 가 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 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 는 이전을 수반 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 는 이전을 수반 하는 점포환경 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 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 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 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 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 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 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 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 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 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 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 약이 종료 (계약의 해 지·영업양 도 포함되 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 에 비례하 는 부담액 은 지급하 지 아니하 거나 이미 지급한 경 우 에 는 환수 가 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사업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음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착한낙지(FOOD CHT&S)]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메뉴 조리 / 테이블 세팅 고객 응대 / 위생 교육 등	이론, 실습	오픈 7일 전까지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신 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이론, 실습	필요 시	필요 시
보수 교육	고객응대 및 마케팅교육 판매 촉진방안 등	이론, 실습	필요 시	필요 시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착한낙지(FOOD CHT&S)]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신규 교육	10시간	5,500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별도 계획	별도 책정	필요 시
보수 교육	별도 계획	별도 책정	필요 시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가맹점 개점 전까지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 개점 승인을 보류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본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108-34

상기 직영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3년 4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166,477	당사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1588-8617)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chakhannakji.com]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에 점포를 개설하고자하는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제공일: 20 년 월 일

■ 가맹희망자 보관용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명	
가맹희망자 (※ 모든 빈칸은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주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 제공 받은 시간까지 작성(24시 형태로), 예)오후 2시면 14시로 기재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작성 (가맹본부 사무실, OO가맹점 내, 서울시 강남구 소재 OO커피숍 내)
⑥ 수령확인문구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정히 (수 령 하 였 음)
	※ “수령하였음”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제공하고 ① ~ ⑥의 각 빈칸이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v.2017.09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명	

가맹희망자

(※ 모든 빈칸은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주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 제공 받은 시간까지 작성(24시 형태로), 예)오후 2시면 14시로 기재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작성 (가맹본부 사무실, OO가맹점 내, 서울시 강남구 소재 OO커피숍 내)
⑥ 수령확인문구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정히 (수령하였음)
	※ “수령하였음”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제공하고 ① ~ ⑥의 각 빈칸이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v.2017.09